

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8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아동그룹홈 활성화 및 그룹홈 간 협력·연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「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기관으로서,

나. 아동그룹홈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」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인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, 그룹홈 아동 입소·퇴소·상담·조사·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,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업무는 보육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

※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,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

다. 위탁사무 내용

○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항

-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, 그룹홈 아동 입소·퇴소·상담조사·사후관리업무 등에 대한 지원,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중구 을지로18길 5, 무광빌딩 6층
- 개소일자 : 2012. 12. 1.
- 이용대상 : 아동그룹홈 종사자 및 아동
- 지원시설 : 사무실, 회의실, 상담실 등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0. 12. 1. ~ 2023. 11. 30.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367백만원('20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314백만원, 사업비 48백만원, 운영비 5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

제8조(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,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11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그룹홈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전문단체 중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④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민간위탁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정태영(☎ 2133-5186)